

2020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9년 겨울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2020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신청 불필요

⇒ 가정형편 등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에도 계속 지원

♣ 2020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②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 ③ 전화 신청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와 상담 후 급식신청)

□ 급식지원 집중신청기간 : 2020. 6. 24. (수) ~ 2020. 7. 10.(금)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 도시락	[] 전자카드
--------	-----------------	---------	----------

*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1부.
-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영수증납부확인서(☎ 1577-1000),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증빙서류 :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읍·면·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비고
양 동	오영주	350-4209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3-2(양동)	
양 3 동	임동현	350-4231	광주 서구 상무대로1223번길 16(양동)	
농성 1 동	봉현경	350-4254	광주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3(농성동)	
농성 2 동	차상훈	350-4267	광주 서구 화정로 314(농성동)	
광천 동	이승관	350-4291	광주 서구 광천2길 9(광천동)	
유덕 동	여다정	350-4310	광주 서구 유덕로 24(유덕동)	
치평 동	최해빈	350-4327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2(치평동)	
상무 1 동	임아현	350-4349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쌍촌동)	
상무 2 동	이아름	350-4376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7(쌍촌동)	
화정 1 동	정선화	350-4391	광주 서구 내방로338번길 11(화정동)	
화정 2 동	신서영	350-4410	광주 서구 화운로 94(화정동)	
화정 3 동	박민영	350-4436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화정동)	
화정 4 동	신장우	350-4456	광주 서구 염화로83번길 3(화정동)	
서창 동	이현주	350-4471	광주 서구 놀재로 412(서창동)	
금호 1 동	방호산	350-4497	광주 서구 운천로31번길 17(금호동)	
금호 2 동	김지수	350-4512	광주 서구 풍금로 135(금호동)	
풍암 동	오윤지	350-4530	광주 서구 풍암1로 27(풍암동)	
동천 동	김성철	350-4606	광주 서구 유림로98번길 8(동천동)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겨울방학 급식지원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